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관리기관의 장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942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정하고,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의2)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

려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보안심사 결과와 신청한 공간정보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24조의2, 별표1)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또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중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별표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하고, 전문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함

라. 기관별 시행계획 제출 시기의 변경(안 제13조)

기관의 예산안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를 매년 2월 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변경 사항은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로 변경함

마. 관리기관인 민간기관 추가(안 제2조)

지하안전 통합관리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5조, 제12조)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조직 명칭을 현행에 맞춰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5조 중 “행정자치부 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과 시·도지사는”을 “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과 전년도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관별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매년 10월 말까지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과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이용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2. 공간정보의 신청내용이 제1호의 보안심사를 받은 범위 이내인지 여부
3.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등 보안처리 여부
4. 신청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때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된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
해양조사협회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
정부기관

2.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 적합성 점검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보안심사
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2
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

지 사항 발생시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협의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지 정 요 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3명 이상을 구성하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분야 자격자 2명, 정보보안 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또는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공간정보 또는 정보보안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또는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간정보 또는 정보보안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간정보 또는 정보보안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그 밖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간정보 관련 비밀취급업무를 인가 받은 기관 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별표 2]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5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의4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의4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5조의4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 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집단에너지사업법</u> 」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같 은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자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 교통부와 <u>행정자치부 소속</u>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u>행정자치부장관</u> 이 각각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 ----- ----- <u>행정안전부 소속</u>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관별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매년 10월 말까지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과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4항 -----
-----.

제23조의2(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 설>

1. 정보이용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2. 공간정보의 신청내용이 제1호의 보안심사를 받은 범위 이내인지 여부
 3.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등 보안처리 여부
 4. 신청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때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마련된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
보공사

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
업진흥원

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

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

회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2.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

두 갖출 것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

관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 적합

성 점검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보

안심사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신 설>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 발생시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협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60